76. 산림조합 근로자에서 발생한 간질성 폐질환

성별 여 나이 72세 직종 제조업/임업 업무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김〇〇은 1996년 6월 〇〇군 산림조합에 보통인부로 입사하여 솔잎혹파리 방제 소나무 수간주사 작업을 하던중 2007년 4월 간질성 폐질환 진단받았다.

- 2.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김○○은 1992.~ 1996. 7. 20에 OO군 산림계에서 5년간 근무하였고 수간주사 작업이 7월 및 8월에만 있어 각 해별로 입퇴사하였다.1996. 6. 21 ~ 1996. 7.19 에는 수간주사 작업을 하였다. 근로자 진술 확인서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다이메크론 약물 투입 작업을 수해하였으며 사고당시 1일 약제 사용량은 18-24리터였다고 한다. 타 약제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농약 흡수 경로는 알 수 없었다. 근로복지공단 조사자료에는 증상 발생 전일인 1996. 7.19일 기상 상태가 안개가 많이 낀 상태로 모르는 사이에 공기로 흡입했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이메크론 중독의 경우 피부 흡수 경로가 많다는 보고가 있어 노출 경로는 정확이 알 수 없었다.
- 3. 의학적 소견: 당시 나이 61세에 평창군입업협동조합에서 소나무에 수간주사 주입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6년 7월 20일 유기인제 농약(다이메크론)에 중독되었다. 유기인계 농약 중독을 확인하기 위하여 혈중 콜린에스터라제 검사를 수행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아트로핀 및 2-PAM(Pralidoxime) 치료를 하였다. 1997년 12월 24일 호흡곤란 증상으로 OO기독병원에 입원하여 수행한 폐기능 검사상 minimal obstructive lung defect 소견 및 β항진제 치료에 반응함이 확인되어 천식성 기관지염 진단받았으며, 이후 계속 통원치료 받으시다가 2007년 4월초 호흡곤란 증상 악화로 숨이 차서 계단을 못오르고 전신부종 심해져 서울 OO병원 입원하였고 2007년 4월 3일 당시 찍은 흉부 CT 상 간질성 폐질환이 의심 소견으로 진단 받았다.

4. 결론: 근로자 김〇〇은

- ① 유기인계 농약(다이메크론) 중독 이후 발생하였고
- ② 이전에는 다른 호흡기 질환을 앓은 흔적이 없고, 금속 및 광물성 분진, 목분진 등에 노출된 경력도 없지만
- ③ 유기인계 농약으로 인한 간질성 폐질환 유발 가능성에 대한 문헌 고찰상 관련 가능성을 입증하는 보고가 없어

근로자 김OO의 간질성 폐질환은 유기인계 농약 중독에 의해 발생한 후유증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